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3 - 23호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6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현재 각 부서별로 위촉 · 활용 중인 인천광역시 홍보대사의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임무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제정 추진

2. 주요내용

- 홍보대사의 위촉절차 및 임기와 해촉 사유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이나, 지정 홍보활동에 참여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및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14, 팩스 032-440-87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홍보대사의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시정 참여도를 높이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인천광역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국내·외 체육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6.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에 적합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 홍보에 기여할 수 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 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단,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에 관한 위촉·운영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수행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홍보활동 등에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홍보대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관련법령 검토 및 발체사항

관련법령	“해 당 없 음”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	“해 당 없 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홍보대사의 활동비(여비, 광고출연비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홍보대사의 경우 인지도가 높은 저명인사나 방송인을 위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출연료 등 활동비 지급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회적 명성이나 인기도 등에 따라 변화의 폭이 큼
- 현재 운영중인 분야별 홍보대사는 대부분 예산수반 없이 무보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을 수반할 경우라도 위촉 대상자나 활동범위가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준 지급 금액을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 문화복지위원장 박승희 의원